

#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

**Q** 유아용 목욕욕조가 KC대상품목이라면 인증 조건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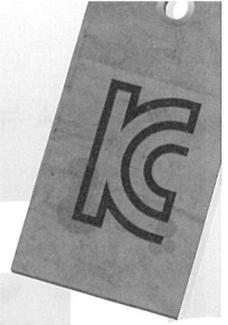
**A** 유아보호용품에 속하는 유아용 욕조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되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과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며, 유아보호용품(욕조포함)에 대한 상세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)에서 제품안전/생활 용품/자율안전확인/유아보호용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**Q** 만드는 모빌 DIY제품도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인증대상인지 궁금합니다.

**A**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완구와 유아용 섬유제품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·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. 판매의 목적이 있는 만드는 모빌 DIY제품은 자율안전확인부속서36(완구) 제1부 일반-용어의 정의, 검사방법, 표시사항 6.2.7 유아용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, 6.3.2 유아침대, 아기놀이판 완구 및 모빌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(완구)로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.



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,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**Q** 어린이용 보드를 중국 OEM 제조를 통해 생산하는데 트라이더, S보드, M스키와 유사한 제품이나 주요 기능이 특허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인증대상에 해당되나요?

**A** 어린이용 보드 중 S보드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스케이트보드로, 체중이 20kg을 초과하는 탑승자 혼자 힘으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갑판으로 구성된 놀이기구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트라이더 및 M스키는 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이 아닙니다.

**Q** 신발은 소재의 종류 뿐만 아니라, 소재의 함량(예:천연소가죽80%+인조가죽20%)까지도 표기해야 하는지요?

**A** 가죽제품 중 신발류의 표시사항은 안전·품질표시 부속서3(가죽제품) 7.1.1에 따라 재료의 종류를 gaps, 창으로 구분하여 재료의 종류만 표시하면 됩니다. 또한, 신발제품에 대한 혼용율은 가죽제품에는 표시하지 않으며, 섬유로 된 신발의 경우에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
**Q** 가로등의 점등, 소등의 기능을 하는 가로등 제어기가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되는지요?

**A** Latch Relay Unit 및 가로등 제어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의 제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**Q** 원적외선 및 음이온발생 절전장치인 '전기절감기'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나요?

**A**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절전장치(전기절감기)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 및 별표2의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**Q** 산업배기가스 제거를 위한 대기청정용 플라즈마 발생용 전원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?

**A** 플라즈마 발생용 전원장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의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